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

(유용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832
----------	-----

발의년월일 : 2019년 8월 7일

발 의 자 : 유 용, 이병도, 김제리,
임종국, 권수정, 경만선,
이성배, 김태수, 김동식,
김정태, 권영희, 문병훈,
이광호 의원 (13명)

1.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의 둔화, 내수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 이처럼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서 창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서울시는 창업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함.
- 이에 따라 서울시의 창업정책과 창업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창업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창업과 창업자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4조)

- 다. 창업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함(안 제5조)
- 라. 창업지원과 관련된 주요정책과 계획,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창업정책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
- 마.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안 제14조,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문화의 확산과 창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을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의 활성화와 유망한 창업자의 효과적 지원·육성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창업 촉진을 위하여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창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촉진을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창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업촉진과 창업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종합계획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① 시장은 창업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 등과 창업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창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창업지원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창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유망한 창업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위원 중 호선된 위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시의 창업지원 분야 국장급 이상 공무원
3.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4.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5. 창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그 밖에 심의·자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 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창업지원 사업)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망한 창업자의 발굴·육성

2. 창업 공간과 시제품 제작 지원

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5. 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6.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
7. 창업자금과 판로 지원
8.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창업지원시설 입주자의 모집방법, 선정방법, 입주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창업교육) 시장은 창업 저변을 확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등에게 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표창) 시장은 창업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기본조례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4조(창업지원 사업), 제15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16조(창업 교육), 제17조(실태조사)에 따라 비용 발생
- 단, 제14조(창업지원 사업), 제15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제16조(창업 교육), 제17조(실태조사)의 경우, 해당사업을 서울시에서 기추진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재정 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아님
 - 같은 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 추진 사업

구 분		사업명	세부내용
제14조	제1호 유망한창업자의발굴·육성	서울창업허브 운영	창업 인재 양성, 예비 창업기업 육성
	제2호 창업공간과시제품 제작지원	서울창업허브 운영	창업허브의 입주공간 및 전주기적 지원 프로그램, 시제품 제작장비 구매
	제3호 제품홍보·마케팅지원	서울창업허브 운영	홍보비
	제4호 창업자의우수한아이디어사업화에대한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¹⁾	서울창업허브-창업지원 :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들의 창업을 지원
	제5호 창업자의해외진출과투자유치지원	서울창업허브 운영	글로벌 성장 지원
	제6호 창업에필요한교육과상담제공	서울창업허브 운영	상담센터 운영 등 창업문화 확산
	제7호 창업자금과 판로 지원	서울창업허브 운영	초기 창업기업 육성
제15조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서울창업허브 운영	관리비, 사무비
제16조	창업교육	신지식에듀센터	신지식 스타트업스쿨
제17조	실태조사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	맞춤형 경영개선 지원- 창업실태 조사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1) 서울창업허브-창업지원 :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자들의 창업을 지원
https://job.seoul.go.kr/www/establish/establish-fund_1.jsp

나. 추계결과 ≙ 42,000천원(연평균 8,4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8,40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19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창업정책위원회는 20명으로 구성하되 시의원 1명, 공무원 3명,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1명,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명 구성을 전제
- 지원협의회는 분기별 1회 운영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42,000천원

- 총비용 = 창업정책위원회 운영비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19)	(2020)	(2021)	(2022)	(2023)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산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운영비(제7조)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소계(b)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 총 비용(b-a)			8,400	8,400	8,400	8,400	8,400	42,000

○ 창업정책위원회 운영비 = $\sum_{i=1}^5 (\text{연간위원회운영비용})_i$

i = 비용추계 연차(2019년~2023년)

- 연간 위원회 운영비용 ≙ 8,400천원

≙ 150천원(참석수당) × 14명 × 4회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 1명, 서울시 공무원 3명,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대표이사 1명,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1명 등 6명은 참석수당 지급 비대상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기준

※ 위원회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2시간 이내), 초과 50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정책조사팀장 여차민

예산분석관 이정수

☎ 02-2180-7942

e-mail : intezer@seoul.go.kr